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58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부승찬 · 장철민 · 박지원  
김한규 · 한준호 · 박선원  
강준현 · 김준형 · 이성운  
손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

항, 제10조의2 신설)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적절히”를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적절히”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하고,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여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군사기밀 지정의 불이행) 군사기밀의 지정권자(지정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사기밀 지정의 불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u>적절히</u>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u>지정하여야</u> 한다.</p> <p>② (생략) <u>&lt;신설&gt;</u></p>	<p>제4조(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① ----- -----<u>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적절히</u>----- -----<u>지정하고,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고지하여야</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0조의2(군사기밀 지정의 불이행) 군사기밀의 지정권자(지정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가</u> <u>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p>